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

사회(임팩트)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안

의 안 번 호

제출년월일 : 2018년 3월 29일

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· 융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 있음
- 나. 서울시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(임팩트투자)금융 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조합 결성·운용하고자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운영개요

- 설치근거 (법령 등)
 -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 -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(중소기업자의 범위)
 -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(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)
 -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○ 추진경과

- '12. 4. 13. :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조성·운용계획 수립
- '12. 7. 30. :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공포
- '13. 2. 5. : 사회투자기금 관리·운용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
- '16. 11. 3. : 사회투자기금 종합 개편계획 수립 및 市 직영화 추진

3.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 : 사회적경제기업,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젝트, 사회주택 등

○ **규 모**: '18. 3월 현재 552억원

○ **운영관리** : 市 직영('17, 4, 1,~)

4. 사회투자조합 출자 개요

- 출자근거 :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4조 5항
 -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투자 가능

○ 추진 필요성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필요
 - ▶ 투자를 통한 市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
 - ▶ [현재] 재정지원・융자 → [개선] 재정지원・융자 + 투자・전문보육
 - ※ (중소벤처기업부)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
 - ▶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
 - · '16년 투자기업들의 '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%로 괄목 성장,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
- **추진 방향** :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
 - 서울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·보육 연계 지원
 -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(투자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투자)
- **조성형태**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

| 조성형태 | 근거법령 | 투자대상 | 투자의무비율 | 존속기간 | 설립주체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|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| 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|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| 5년 이상 |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(자본금 50억원) 신기술사업금융업자 (자본금 100억원) |
|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| 여신전문 금융업법 | 신기술사업자 | _ | _ | 신기술사업금융업자 (자본금 100억원) |
| 한국벤처 투자조합 |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| 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 | _ | 5년 이상 |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|

○ 조합 조성·운영절차

- 조합 존속기간 : 8년 이상

- 투자조건 :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% 이상 투자

- 투자대상 (A+B+C 모두 만족)

| 구 분 | 대 상 | 비고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지역(A) | 서울 소재 | • 본사,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| | |
| 정의(B) | 사회적경제 기업 등 | •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| | |
| 형태(C) | 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 | 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창업기업(7년 미만) 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• 「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」에 의해 선정된 기업 •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의한 중소기업 | | |

[조합 조성 및 운영 흐름도]



○ 출자계획

- 출자재원 :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협력사업 투 · 융자사업비

- 출자금액 : 최대 10억원

○ 운용사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
- 신청자격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

※ 임팩트 투자 실적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 운용 실적 필요